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5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5월 16일

3. 제안이유

-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화 추진 협의회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준칙시달 (내무부행정 13104-297 '94.2.21)
- 당면한 지방행정의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방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함.

4. 주요골자

- 협의회의 기능은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의 설정,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도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및 국제화 홍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기능을 수행함.

- 협의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회장을 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민·관·산·학의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검토한바, 세계를 한 울타리속의 이웃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정세가 급속한 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국제화추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킴과 지방행정의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각분야의 참여속에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의 구성운영에따른 조례내용을 신설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에 있어 국제교류계획및 교류방향의 설정,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 지역주재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및 국제화 홍보 등과 국제화에 관련한 필요인정 사항등을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성위원수에 있어서는 부지사를 회장으로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에있어서는 3년을 단위로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회장의 직무, 회의소집, 협의조정사항의처리, 공청회 개최 등의 협의회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및 지방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